

[변경 대비표]

1. 펀드명 : 우리중소형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
2. 작성기준일 : 2020.09.03

3. 효력발생일 : 2020.09.23

4. 정정사유

- ① Class S-P(퇴직) 수익증권 신설
- ② 전자등록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 상 명칭변경 반영
- ③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5조 개정사항 반영
- ④ 기준일자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
5. 투자설명서 정정 사항

구분	정정사유	변경(전)	변경(후)
요약정보			
투자비용	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-	-
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	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-	-
운용전문인력	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-	-
집합투자기구의 종류 기타-퇴직연금	클래스 추가에 따른 내용 추가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종류 S-P의 경우 퇴직연금전용이 아닌 개인연금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종류 S-P의 경우 개인연금전용 집합투자기구이며, 종류S-P(퇴직)이 퇴직연금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.
제 1 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클래스 추가	<추가>	S-P(퇴직)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클래스 추가	<추가>	S-P(퇴직)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-	-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구조 -퇴직연금(P)	클래스 추가에 따른 내용 추가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종류 S-P의 경우 퇴직연금전용이 아닌 개인연금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종류 S-P의 경우 개인연금전용 집합투자기구이며, 종류S-P(퇴직)이 퇴직연금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.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	클래스 추가	<추가>	< 표1 >

가. 매입 (3) 종류별 수익증권 매입자격			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※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예시	클래스 추가 클래스 추가 클래스 추가	< 추가 > < 추가 > < 추가 >	S-P(퇴직) : 없음 < 표 2 > < 표 3 >
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. 이익배분 (2) 상환금등의 지급	전자등록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 상 명칭변경 반영	한국예탁결제원	전자등록기관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<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재무정보, 수익률 등 업데이트 >			
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	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-	-
제 5 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	전자등록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 상 명칭변경 반영	한국예탁결제원	전자등록기관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	전자등록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 상 명칭변경 반영	한국예탁결제원	전자등록기관

6. 간이투자설명서 정정 사항

구분	정정사유	변경(전)	변경(후)
투자비용	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-	-
투자실적추이 (연평균수익률)	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-	-
운용전문인력	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-	-
집합투자기구의 종류 기타-퇴직연금	클래스 추가에 따른 내용 추가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종류 S-P의 경우 퇴직연금전용이 아닌 개인연금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종류 S-P의 경우 개인연금전용 집합투자기구이며, 종류S-P(퇴직)이 퇴직연금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.

< 표1 >

종류별(Class)	가입자격
------------	------

S-P (퇴직)	수수료미징구 -온라인슈퍼 -퇴직연금	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전자매체(온라인) 전용 수익증권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< 표2 >

구분		지급비율(연간,%)									
		집합투자 업자보수	판매회사 보수	신탁업자 보수	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	총보수	기타비용	총보수 · 비용	(동종유형 총보수)	합성 총보수·비용 (모투자신탁 총보수비용 포함)	증권 거래 비용
S-P (퇴직)	수수료미징구- 온라인슈퍼- 퇴직연금	0.4400	0.2700	0.0400	0.0120	0.7620	실비	0.7620	-	0.7660	실비

< 표3 >

종류(Class)		투자기간	1년	2년	3년	5년	10년
S-P (퇴직)	수수료미징구-온 라인슈퍼	판매수수료 및 보수 · 비용	78	159	244	423	944
	-퇴직연금	판매수수료 및 보수 · 비용 (모투자신탁의 총보수 비용포함)	78	160	245	426	949

7. 집합투자규약

구분	정정사유	변경(전)	변경(후)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Class S-P(퇴직) 수익증권 신설	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~15. <생략> 16. <신설>	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~15. <좌동> 16. Class S-P(퇴직) 수익증권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Class S-P(퇴직) 수익증권 신설	① <생략> 1~14. <생략> 15. <신설>	① <생략> 1~14. <좌동> 15. Class S-P(퇴직) 수익증권
제14조(수익자명부)	전자등록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상 명칭 변경 반영	한국예탁결제원	전자등록기관
제35조(상환금등의 지급)	전자등록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상 명칭 변경 반영	한국예탁결제원	전자등록기관
제39조(보수)	Class S-P(퇴직) 수익증권 신설	③제1항의 규정에-<생략>-곱한 금액으로 한다. 1~15. <생략> 16. <신설>	③제1항의 규정에-<좌동>-곱한 금액으로 한다. 1~15. <좌동> 16. Class S-P(퇴직) 수익증권

			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4.4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2.7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4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2</p>
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반영	<p>①~③ <생략></p> <p>④ <신설></p> <p>⑤ <신설></p>	<p>①~③ <이하동일></p> <p>④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 39 조와는 별도로 제 5 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.</p> <p>1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의 법령·신탁 계약·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</p> <p>2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</p> <p>⑤ 제 4 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와 수익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, 변경 시행일 전 까지 상호협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. 대상금액 :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시행일 전일까지 제 39 조 제 3 항에 따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보수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지급한 비용(법률자문, 사업성평가, 금융자문 등)</p> <p>2. 대상기간 : 변경시행일로부터 1 년간. 단,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</p>
제47조(투자신탁의 합병)	전자등록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상 명칭 변경 반영	한국예탁결제원	전자등록기관

제50조(공시 및 보고서)	전자등록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상 명칭 변경 반영	한국예탁결제원	전자등록기관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--